



보도자료

2021. 12. 15. (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27 - “공정한 거래질서 해치는 인위적 주가조작 범죄 OUT!” 주가조작 근절 공약 발표

- 투자자 피해 유발, 자본시장 발전 저해하는 주가조작 수법 나날이 조직적·지능적 변모
- 엄격한 입증책임 요구에 낮은 기소율, 처벌까지 장시간 소요 등 현행 제도에 한계 있어
- 불법 이익 환수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자본시장 참여 제한·금융거래 제한·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 방식 다각화 대책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2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주가조작 근절’을 발표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소액투자자의 피담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라며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갈수록 그 수법도 조직적이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962년 (구)증권거래법 도입 이래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물론 형사처벌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 수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해 실질 기소율은 낮은 편이다.

부당이득 환수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있다.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후보는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미 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 며 세부 대책을 내놨다.

첫 번째 대책으로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의 효과적 환수가 가능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 부과를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제재 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하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은 공정한 자본시장 만들기의 시작” 이라고 강조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2630-0004

공약내용 및 Q&A

Q. 공약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첫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는 미공개정보이용(제174조), 시세조종(제176조), 부정거래(제178조)가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만 부과되고 있어 다수 투자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범죄 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습니다.

둘째,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외 주요국에서는 형벌이나 과징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재수단을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등에 따라 형벌이나 과징금 이외에도 다양한 행정 제재수단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제재수단 관련 해외제도 현황 >

구 분	해외제도 현황	국내제도 현황
자본시장 참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 캐나다: 최대 영구, 홍콩: 최대 5년, 독일: 최대 2년간 	- 유사제도 없음
금융거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SE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 처분·사용·이전을 제한 	- 자본시장법에는 유사제도 없음(타법상 유사제도*는 有 *보이스피싱 방지법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cease & desist or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SEC는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 가능 - 부당이득 환수, 상장회사 임원선임 및 취업제한 등 병과 가능 - 명령 위반 시 건당 최대 10만 달러 제재금 부과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법행위 시정 및 중지명령 가능 - 투자자 등 개인에 대해 유사제도 없음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회사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위반한 자는 형 집행 종료 후 2년간 주식회사의 임원선임 제한 ○ 영국: 회사의 설립·운영 관련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자에 대해 법원이 5~10년 범위에서 회사의 임원선임제한 명령 	- 특정경제범죄법: 횡령·배임 등의 경우 금융회사, 국가출연기관, 해당 범죄 관련 기업체 5년간 취업 불가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시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선임 불가

Q. 과징금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다양한 민사·형사·행정적 제재수단을 적극 운용 중이나 우리나라는 62년 (구)증권거래법 이래 형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강화와 함께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선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은 약 2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형사제재의 공백을 보완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Q. 불법공매도 처벌도 가능한가요?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공매도 처벌은 ‘무차입 공매도’에 의한 처벌입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연루된 공매도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 공약은 불법공매도를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